

6.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農林水産部令 第1049號 1990年 8月 24日 公布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농지증명발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 농지·농업보호구역안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증명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발급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진흥지역안농지인구의 여부와 농업진흥지역의 각 용도구역별 토지이용허용행위 인지의 여부.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①영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의 확인요청을 받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

사기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농지전용허가) ①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영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군수(이하 “관할청”이라 한다)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조성비”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증을 한 경우에는 제8조의3제3항 및 제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수납통보를 받은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개발, 공용·공공용목적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조성비의 부과통지) 관할청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성비의 고지납입) ①기금관리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이하 “납입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기금관리자가 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한다.

③수납기관은 조성비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5)의 농지조성비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3)의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는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4)의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는 관할청에 각각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4(조성비의 신고납입) ①관할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조성비의 신고납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납입기간은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

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납입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1)의 농지조성비 납입신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비의 신고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4)의 농지조성비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의5서식(2)의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는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의5서식(3)의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는 관할청에 각각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확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발급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납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등)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체금은 납입기간연장의 승인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의 확인을 받아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군수를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내지 제6항을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동조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도지사인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도지사인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군수인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중전의 동조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조의4”를 “제8조의5”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청이 농림수산부 장관인 경우에는 군수가 제출한 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지전용용도의 변경승인)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당해토지의 토지대장등본
3. 당해토지의 지적도
4. 부근토지 또는 농가의 일조·통풍·통작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토사유출·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방지 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당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의견서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승인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의9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읍·면장 또는 군수는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지전용신고)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당해농지의 토지대장등본
3. 당해농지의 지적도
4. 당해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5. 부근토지 또는 농가의 일조·통풍·통작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토사 유출·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방지 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송부 받은 읍·면장은 당해 농지의 전용에 따

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군수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중 “농지가 실제로 전용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마다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를 “농지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가 실제로 전용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수를 재배 또는 식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5호의2서식의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4. 부근토지 또는 농가의 일조·통풍·통작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관상수재배 또는 식재의 목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여부
2. 부근토지 또는 농가의 일조·통풍·통작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3. 관상수의 재배지 또는 식재지가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송부 받은 읍·면장은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관상수재배·식재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군수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농가인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준농가인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허가등의 상황보고) 시·도지사 및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5호의3서식]·[별지 제5호의4서식]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별지 제5호의7서식]·[별지 제5호의8서식] 및 [별지 제5호의9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 제서식: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증명의 발급 및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증명의 발급과 제6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관상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읍·면장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6조의2·제11조의2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동위원회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이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1990.4.7 법률 제4228호)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및 농지의 전용·이용의 특례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용절차를 규정하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1990.6.26 대통령령 제13030호)으로 농지조성비를 신고납입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의 확인요청을 받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용목적의 실현성, 전용목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농지전용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도록 함(제6조의2).
- 나.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농지조성비를 신고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농·축·수협중앙회등에 농지조성비납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4).
- 다.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며, 군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제9조의2).
- 라. 농지전용의 신고 및 관상수의 재배 또는 식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여부, 농지보전에 미치는 영향등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송부하며, 읍·면장은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이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제11조의2 및 제23조의2).

〈농림수산부 제공〉